

- 제35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-

물품지원협약서

진천봉화로타리클럽과 진천군체육회는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수행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은 진천봉화로타리클럽이 진천군체육회에 물품을 지원함에 있어 상호협력 체계를 확립하고, 이를 통해 제35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 및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 내용)

1. 진천봉화로타리클럽은 진천군체육회에 생수 2,200개, 이온음료수 2,100개를 지원한다.
2. 지원 품목 및 수량은 별도 부속 합의서로 명시할 수 있다.

제3조(역할 및 의무)

1. 진천봉화로타리클럽은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을 제공한다.
2. 진천군체육회는 지원받은 물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.
3. 진천군체육회는 언론 보도, 홍보자료, 행사 현수막 등에 진천봉화로타리클럽을 후원기관을 명기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식 및 홍보)

1. 진천봉화로타리클럽과 진천군체육회는 상호 합의된 일시에 협약식을 개최한다.
2. 협약식과 관련된 사진, 영상, 보도자료는 상호협의로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

1.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협약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며,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.

부 칙

진천봉화로타리클럽과 진천군체육회는 위와 같이 합의하고,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물품 지원 협약서 2부를 작성, 서명 또는 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9월 10일



진천군체육회
회장 김화영



진천봉화로타리클럽
회장 구종근

김화영

구종근